

2026년 미추홀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안내

□ 2026년 미추홀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

○ 선정결과 통지: 2026. 9. 14.(월) / 신청자 개별 통지

○ 선정인원: 총 986명
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(19~34세): 953명
-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(35~39세): 33명

○ 선정기준

-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·재산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
- ※ 세부 선정결과 및 선정기준은 붙임 참조

○ 지원내용

-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(회), 총 480만원 한도 내에서 분할 지원
- ※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제외

○ 이의신청

- 신청기한: 2026. 9. 15.(화) ~ 10. 14.(수) 18:00 도착분까지
- ※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초일 불산입, 공휴일 포함)
- 신청대상: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
- 신청방법: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- 제출처: 미추홀구 독정리로 95, 미추홀구청 제3청사 1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
방문/우편 접수 또는 iys00206@korea.kr 메일 접수
- 문의처: 032-880-7938, 7989, 7992
- 처리기한: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

※ [붙임3] 이의신청 유의사항 참고

붙임 1. 소득·재산 산정기준 1부.

2. 선정기준[모집인원 초과 시] 1부.

3. 이의신청 유의사항 1부.

붙임1

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·재산 산정 기준

【청년독립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】

-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**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**일 것

$$\text{소득평가액} = \text{㉓} \text{근로소득} + \text{㉔} \text{사업소득} + \text{㉕} \text{재산소득} + \text{㉖} \text{공적이전소득} - \text{㉗} \text{근로사업소득공제}$$

- ② 재산요건 :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$$\text{총재산가액} : \text{122백만원 이하} (\text{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+차량가액})$$

$$\text{총재산가액} : \text{㉕} \text{일반재산가액} + \text{㉘} \text{자동차가액} - \text{㉙} \text{부채}$$

- ㉓ (근로소득) 상시근로소득 ㉔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 ㉕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 ㉖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 ㉗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 ㉕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 ㉘ (자동차) 자동차
 ㉙ (부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(단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 ㉚ (대출금)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
 ㉛ (공공기관 대출금) 농지연금 등

【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】

-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**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**일 것

$$\text{소득평가액} = \text{㉓} \text{근로소득} + \text{㉔} \text{사업소득} + \text{㉕} \text{재산소득} + \text{㉖} \text{공적이전소득} - \text{㉗} \text{근로사업소득공제}$$

- ② 재산요건 :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$$\text{총재산가액} : \text{470백만원 이하} (\text{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의 총자산가액})$$

$$\text{총재산가액} : \text{㉕} \text{일반재산가액} + \text{㉘} \text{자동차가액} - \text{㉙} \text{부채}$$

- ㉓ (근로소득) 상시근로소득 ㉔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 ㉕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 ㉖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 ㉗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 ㉕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조함원입주권, 분양권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 ㉘ (자동차) 자동차가액
 ㉙ (부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(단,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,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)
 ㉚ (대출금)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
 ㉛ (공공기관 대출금) 농지연금, 주택연금 등

※ 부동산, 자동차,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

붙임2

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기준[모집인원 초과 시]

- 대상자별 청년가구의 소득(25%), 청년가구의 재산(25%), 원가구의 소득(25%), 원가구의 재산(25%)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, 동점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점수가 낮은 순으로 결정
 - 청년가구 소득점수(25점) = 청년가구의 소득 / 청년가구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60%) × 25
 - 청년가구 재산점수(25점) = 청년가구의 재산 / 청년가구 재산기준(1억 2천2백만원) × 25
 - 원가구 소득점수(25점) = 원가구의 소득 / 원가구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) × 25
 - 원가구 재산점수(25점) = 원가구의 재산 / 원가구 재산기준(4억7천만원) × 25
 - 총 점수(100점) = 청년가구 소득점수 + 청년가구 재산점수 + 원가구 소득점수 + 원가구 재산점수
- *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 경우, 원가구와 청년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가

붙임3

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 유의사항

- 소득재산 등 재확인시에도 해당 신청인의 최초 조사시점을 적용함에 따라,
①소득평가의 경우 신청자가 조사 시점 이후 (자신의 소득 감소로 인해) 변동된 소득 시점으로 재조사 및 인정 요구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, ②재산평가의 경우 부채(주거용) 자료 누락 및 공적자료가 오류가 있음을 증빙하여 소명될 경우 이의신청 가능
예) 6.15 조사시 소득초과로 제외, 8월 중순부터 소득이 없다고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
- 이의신청 인용결정자에 대해서는 5월분부터 소급 지급
- 증빙서류
 -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-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신분증 사본 등)
 -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